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3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소방관서 신설 및 2014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반영 등을 위한 정원의 증원과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조정 : 3,118명 → 3,203명(+85명) (안 제2조)
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527명 → 1,539명 (+12명)
 - 소방공무원의 정원 : 1,479명 → 1,552명 (+73명)
-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조정 (안 별표 2)
 - 연구직 : 연구관(16%이내→19%이내),
연구사(84%이상→81%이상)
 - 소방직 : 소방경(6%이내→10%이내),
소방위(8%이내→ 9%이내)
소방장(14%이내→15%이내),
소방사(37%이내→31%이내)

○ 직급·직종별 정원조정 (안 별표 3)

- 일반직 6명 증원 : 5급이하 +6명
- 연구직 6명 증원 및 직급조정 : 연구관 +4명, 연구사 +2명
- 소방직 73명 증원 및 직급조정 :
소방정 +2명, 소방령이하 +71명

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소방관서 신설 및 2014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반영 등을 위한 정원의 증원과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것으로,

주요 내용은,

안 제2조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1,527명에서 1,539명으로 12명 증원하고,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1,479명에서 1,552명으로 73명 증원하는 등 정원의 총수를 3,118명에서 3,203명으로 85명 증원하고,

안 별표 2의 연구직의 연구관 책정 기준을 16%이내에서 19% 이내로, 연구사의 책정 기준을 84%이상에서 81%이상으로 하고, 소방직의 소방정 책정기준을 6%이내에서 10% 이내로, 소방위의 책정 기준을 8%이내에서 9% 이내로, 소방장의 책정기준을 14%이내에서 15% 이내로, 소방사의 책정기준을 37%이내에서 31%이내로 변경하고,

안 별표 3의 직급·직종별 정원조정에서 일반직 5급 이하 6명을 증원하고, 연구관 4명, 연구사 2명 등 연구직 6명을 증원하고, 소방정 2명, 소방령 이하 71명 등 소방직 7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